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청 혁신’ 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8. 29.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2년 8월 16일
- 나. 발 의 자: 이충현 의원 외 18명
- 다. 회부일자: 2022년 8월 23일
- 라. 상정일자: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2. 8. 2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시정되지 않거나 민원이 극심한 각종 인허가 사항 등과 각종 민간 위탁 사업과 관련한 비효율적, 낭비적 행정 및 기타 부적정하거나 불법, 위법성이 있는 행정행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강서구청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 구성위원수: 9명 이내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 위원선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 위원회 활동기간: 구성일로부터 6개월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49조, 제64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9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가. 제정취지

-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성되는 것으로,
- 본 결의안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시정되지 않거나 민원이 극심한 각종 인허가사항 등과 각종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한 비효율적, 낭비적 행정 및 기타 부적정하거나 불법, 위법성이 있는 행정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청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설치목적
 - 주요 행정행위의 부적정성, 비효율성, 절차상 위법성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강서구청 혁신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위원구성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

○ 위원선임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와 제13조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

○ 활동기간

-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함

다. 종합의견

- 본 결의안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으나 시정되지 않거나 민원이 극심한 각종 인허가사항 등과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한 비효율적, 낭비적 행정 및 기타 부적정하거나 불법 위법성이 있는 행정행위 등을 조사하고 조치하여 강서구정을 혁신하고자 하는 것이나
-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활동으로 특정사안, 즉 특정 사업의 인허가사항이나 민원사항 등 구체적인 범위에 한정된 조사요구가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됨
- 또한 예산 편성과 관련 정확한 예산 추계를 산출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붙임 관계법령 1부.

□ 지방자치법 제49조, 제64조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9조

제6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각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9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 위원구성, 활동기간, 활동내용, 소요경비 등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구성, 활동기간, 소요경비에 한정하여 변경 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종료 전 안건의 심사결과나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가 본회의 의결 전인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때까지 특별위원회가 존속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⑤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 정사무중 특정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위원 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본회의 또는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 경비 등을 기재 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